

창원지방법원 2024. 6. 28 선고 2023나1141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6. 28 선고 2023나114172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9. 19 선고 2023가단83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, 담당변호사 이해영

변론종결 2024. 5. 3.

판결선고 2024. 6. 28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. 9. 19. 선고 2023가단83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임야 2,083㎡에 관하여 1995. 7. 30. 또는 2019. 12. 3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 및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,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. [추가하는 부분]

-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- 피고의 아버지 H이 E이나 M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거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의 점유권원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지만[원고의 주장대로 H이 성(姓)을 N씨에서 O씨로 변경하면서 N씨의 땅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되므로 H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취득 경위가 원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], H이 E이나 M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거나 소유권이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.
-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임야를 H이 성(姓)을 O씨로 변경할 무렵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H이 1975년경 이사를 하면서 원고 부부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증여의 시기, 방법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영훈, 판사 이진석, 판사 김상욱